

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 (협의기관 30일 포함)				
신청인	성명(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			
	주소	전화번호					
신청내용	사업명칭						
	사업목적						
	위 치			시행면적	㎡		
	시행방식			사업기간			
	토지이용 현황	지목별					
		면적(㎡)					
	토지이용 계획	용도별					
		면적(㎡)					
	지원기반시 설계획	시설별					
		개요					

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(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) 2.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. 보상계획서(이주대책을 포함합니다) 4.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 5.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(調書) 및 도면(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6.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합니다)의 감정평가서(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(뒤쪽으로 계속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----

첨부서류	7.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(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.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에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설치 비용에서 빼고 계산합니다. 8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합니다)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.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,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.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.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.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
------	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